

## 의성군의회 공고 제2020-13호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의성군의회  의장

##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1. 제안이유

-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지원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은 연간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음(안 제3조)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변경) 및 활동계획서 작성과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대한 규정을 둠(안 제4조, 제12조)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 회의 및 심의규정을 둠(안 제5조 ~ 제7조)
-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기간과 활동계획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8조, 제9조)
- 외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제10조)
-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 근거를 둠(안 제11조)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취소 및 폐지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3조 ~제15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예산조치 : 예산부서와 협의

### 4.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19일까지 의성군의회의회장(참조 : 의회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의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의성군 의성읍 후죽5길 24【우편번호 : 37337】

의회사무과 (☎ 054-830-6391)

##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성군 의정 및 군정발전과 관련된 입법 활동, 정책개발 및 주요시책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의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의성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제5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대표자는 즉시 소속 의원의 변경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제5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수행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 활동 계획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연구 활동 기간)**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5월 30일까지로 한다.

**제9조(연구 활동 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단체 지원)** ① 연구단체가 의장에게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면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에 등록된 의원 1명당 지원 범위는 의원정책개발비 예산편성 기준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1.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여론 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 용역비

②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 활동비 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14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원연구단체 폐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지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연구단체명:
2. 연구 목적:
3. 구 성 원:   명

구 분	성 명	소 속 상 임 위 원 회	서 명	비 고
회 장				
부 회 장				
회 원				

※ 붙임: 회칙 또는 정관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회장 ○ ○ ○ (인)

의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연구활동 계획서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 단체 명		
회 장		의원
연구 내용	주 제	
	목 적	
연구 활동 기간		~
연구방법·연구 활동내용 및 세부 계획		「붙임」
연구 활동비	소 요 액	
	산출내용	「붙임」
비 고		

※ 붙임: 연구 활동 세부계획서, 연구 활동비 산출내용 각 1부

신청인: ○○연구단체 회장 ○○○ (인)

의성군의회 의장 귀하



# 등 록 증

등록번호

단 체 명

설립목적

구성인원 대표자 의원

회원 의원, 의원

위 단체는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의성군의회 의장 인

[별지 제4호서식]

## 연구단체 의원 변경신고서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의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회 장		
변경 의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경 일자	년 월 일	
변경 사유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회장 ○○○ (인)

의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결과 보고서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구 분		내 용			
연구단체 등록	단체명				
	적격여부	적격		부적격	
	부사적격유				
연구주제	주제명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부사적합유				
활동계획	연구방법 활동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부사적합유				
연구활동비 지원	지원액				
	세부내용	「세부내용: 불임」			
비 고					

년 월 일

의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의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회장		의원	
연구 내용	당초	주제	
		목적	
	변경	주제	
		목적	
변경사유			
변경후	연구방법 연구활동내용 세부활동내용		
비고			

※ 첨부: 세부 연구계획서(변경분)

신청인: ○○연구단체 회장 ○○○ (인)

의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신청서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회 장	의원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신청액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신청액 ( A )	
기수령액(B)			
이번 신청액(C)			
수령잔액 (D = A - B - C)			
수령인	성명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비 고			

※ 붙임: 연구 활동 세부계획서, 연구단체 활동비 산출내용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회장 ○○○ (인)

의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 단체 명	
회 장	의원
연구 주제 명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내용 요약	
비 고	

※ 붙임: 연구 활동 세부결과보고서

년 월 일

○○연구단체 회장 ○○○ (인)

의성군의회 의장 귀하

